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29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영농조합법인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7. 31.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청구원인 및 2019. 9. 4.자 참고자료에 비추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가. 원고는 2015. 5. 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 5. 30. B로부터, 다음과 같이 4필지의 토지(이하 '현물출자 토지'라 한다)를 5,475,940,000원(이하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를 받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당)	공시지가(전체)
[redacted] 구 C	D(답)	1,144㎡	212,000원	242,528,000원
	E(답)	1,408㎡	1,040,000원	1,464,320,000원
	F(대)	192㎡	1,610,000원	309,120,000원
	G(전)	324㎡	226,800원	73,483,200원
합계				2,089,451,0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redacted] 구 E 답 1,408㎡(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137.4㎡(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등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지1 기재와 같이 '현물출자 토지의 신고가액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 현물출자 토지의 총 공시지가'의 산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추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3.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현물출자 토지의 신고가액에 대한 공시지가의 비율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평가한 아래 표 E 토지의 '원고평가 현물출자 가액'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면적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당)	원고평가 현물출자 가액	피고계산 현물출자 가액
서울 강동구 C	D(답)	1,144㎡	212,000원	2,841,700,000원	635,606,506원
	E(답)	1,408㎡	1,040,000원	1,464,320,000원	3,837,624,186원[2]
	F(대)	192㎡	1,610,000원	309,120,000원	810,127,833원
	G(전)	324㎡	226,800원	860,800,000원	192,581,475원
합계					5,475,940,000원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총 4필지의 현물출자 토

2) 3,837,624,186원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이 별지1 기재와 같이 374,495,428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지를 한꺼번에 출자하고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면서 필지별 가액 표시 없이 현물출자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을 5,475,94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설령 현물출자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강동등기소장과 강동세무서장에게 위 표 '원고평가 현물출자 가액'란 금액대로 기재된 필지별 평가금액 명세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현물출자 토지 전체가 일괄취득된 것으로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현물출자 토지의 신고가액에 시가표준액 비율인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 현물출자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내역[3)]

2018.1.10기준(582일) (금액단위 : 원)

과세표준	세 목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금액 합계
374,495,428	취득세	29,959,630	2,995,960	5,230,950	38,186,540
	교육세	4,493,940		784,640	5,278,580
	농특세	748,990		130,770	879,760
	합 계	35,202,560	2,995,960	6,146,360	44,344,880

4필지 현물출자 총액 5,475,940,000원 × (2015년 쟁점토지 공시지가 1,040,000원 × 137.4㎡ =142,896,000원 / 2015년 4필지 각각 공시지가 적용 후 합계액 = 2,089,451,000원)

= 과세표준 374,495,428원 × 8%(중과세율) = 취득세 29,959,630원

3) 교육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별지2

원고가 계산한 정당세액

2018.1.10기준(582일) (금액단위 : 원)

과세표준	세 목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금액 합계
142,896,000	취득세	11,431,680	1,143,160	5,230,950	17,805,790
	교육세	1,714,750		299,390	2,014,140
	농특세	285,790		49,890	335,680
	합 계	13,432,220	1,143,160	5,580,230	20,155,610

추징대상 필지 []의 현물출자 금액 1,464,320,000원 × (추징대상 쟁점토지의 137.4㎡ / 감면받은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1,408㎡)

= 과세표준 142,896,000원 × 8%(중과세율) = 취득세 11,431,6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별지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05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